

노.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보 건	안 전	소 장
				방미킴	강기성 박원근	
일 시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회의시간	13:40~15:00		회의장소
참석인원	계	16 명	사용자	8 명	근로자	8 명
전 회 협 의 체 미 결 사 항						
1. 전 회 미 결 사 항 없음.						
순 번	협 의 내 용					
1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5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7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관한사항					
8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사항					
9	- 전 공정 위험성평가 및 수시 위험성평가등에 관한 사항					
10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12	- 작업의 시작시간,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13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14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공통사항	1. 노.사협의체회의 / 위험성평가[04월30일(수)13:40~15:00]					
기타 건의사항	1. 지정병원:강릉동인병원 (033-650-6105) 2. 배치전/특수건강검진:예수강릉메디컬의원 직업환경의학과(033-655-9225) 3. TBM시간 조정					

회의 안건 심의 및 진행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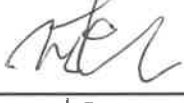
심의. 의결 안건	토의결과
1. 안전교육등 전달사항	1. 현장 정리정돈 및 쓰레기 분리수거, 종이분리수거 철저
	2. 보행자 통로 확보 (휴게실 계단 등)
	3. 근로자 협착위험 있는 기계 및 자재 전도방지조치
	4. 일일 서류 미비시 작업대기
	5. 여름철 온열질환 대비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전파)
	6. 일일 서류 미비시 작업대기
	7. 현장내 차량 경사면에서 하역금지 (평지에서 하역)
	8. MSDS 대상물질 소분용기 경고표지 제조사 표시 必
	9. 위험물 저장소 보관소 관리철저
	1) 경고표지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필요
	2) 전도방지 조치 필요, 소화기 설치
	3) 외부 잡자재 별도보관
	10. MSDS 대상물질 보호구지급 준수 (타설 등)
	11. 환경·민원예방관리 철저
	1) 콘크리트 타설시 폐 콘크리트 담을 박스 배치 등 관리
	2) 소음발생 작업시 에어방음벽 설치 & 8시 이전
	소음작업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
	3) 톨다이 비산방지조치 (집진기 설치 등)
	4) 콘크리트 타설 전·중·후 양수관리 철저
	(콘크리트 물 배출수에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13. 화재예방철저
	14. 종이 파지 보관함에 버릴것
2. 전월 노사협의체 Feed Back	

3. 심의 및 의결결과	1. 전 근로자 대상 2진 아웃제 도입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안전팀에
	적발시 1차 지적 및 교육 / 2차 현장밖으로 퇴출조치)
	- 찬성 16 명, 반대 () 명
	2.장비운전원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서류 제출후
	신규교육 실시
	- 찬성 16 명, 반대 () 명
※산안비 총액 10%내에서만 가능	3.여름철 온열질환 대비 관련품목 산안비적용
	(아이스박스, 쿨워머, 팔토시)
	- 찬성 16 명, 반대 () 명
4. 근로자 의견	

참 석 자 명 단(노사협의체)

현장명 : 강릉 건소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신축공사

2025년 4월 30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업 체 명	성 명	확 인	업 체 명	성 명	확 인
(주)미래도건설	윤승현		(주)미래도건설	최선후	최
(주)리도건설	최진서		(주)리도건설	배진우	
옥삼건설(주)	김현우		옥삼건설(주)	이재민	
신화하이테크(주)	한귀원		신화하이테크(주)	구자현	
비경건설(주)	유명학		비경건설(주)	조인후	
씨엔지건설(주)	김학수	김학수	씨엔지건설(주)	이성호	이
현대소방시설공사	최현호		현대소방시설공사	김병식	김
(주)미래도건설	김영환	김영환	(주)미래도건설	정재민	
간 사	박철근	박철근			
	강우성	강우성			
	방미림	방미림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 2025년 4월 29일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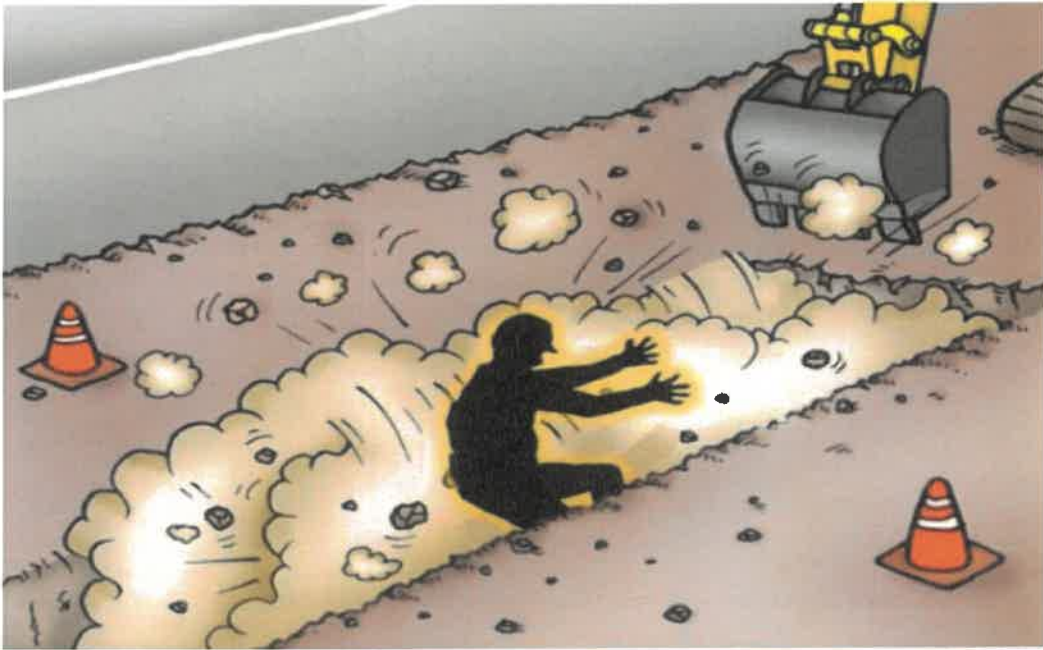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건설업

재해 유형
무너짐



‘25년 4월 26일(토) 12:52경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



예방대책



- 지반 등의 굴착 시 적절한 사면 기울기를 확보합니다.
-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 2025년 4월 29일 11:00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건설업

재해 유형
맞음

‘25년 4월 26일(토) 14: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복지관 신축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중 **떨어지는 데크플레이트에 맞아 사망**



예방대책



- 작업 전 중량물의 무게중심, 인양각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줄걸이 위치를 선정하여 결속합니다.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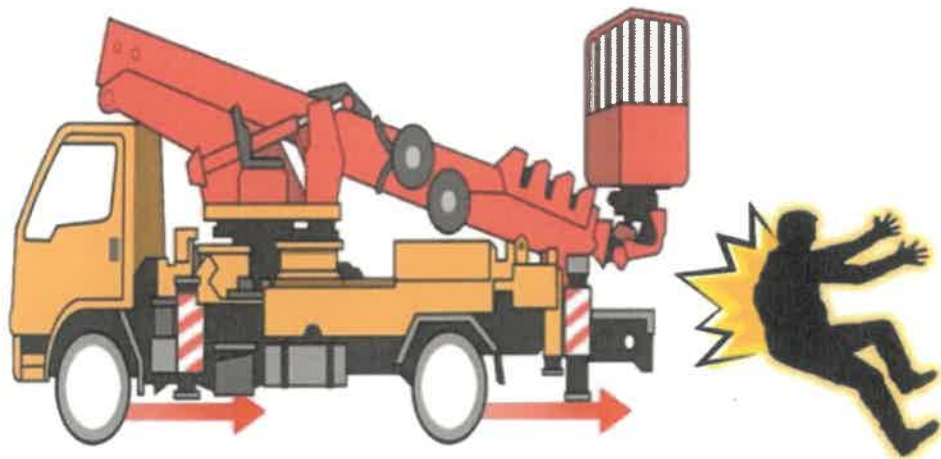
배포일시 : 2025년 4월 25일 17:00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제조업

발생형태
부딪힘

‘25년 4월 24일(목) 08:30경 경남 통영시 소재 조선소에서 재해자가 후진 중인 **고소작업차**에 부딪혀 사망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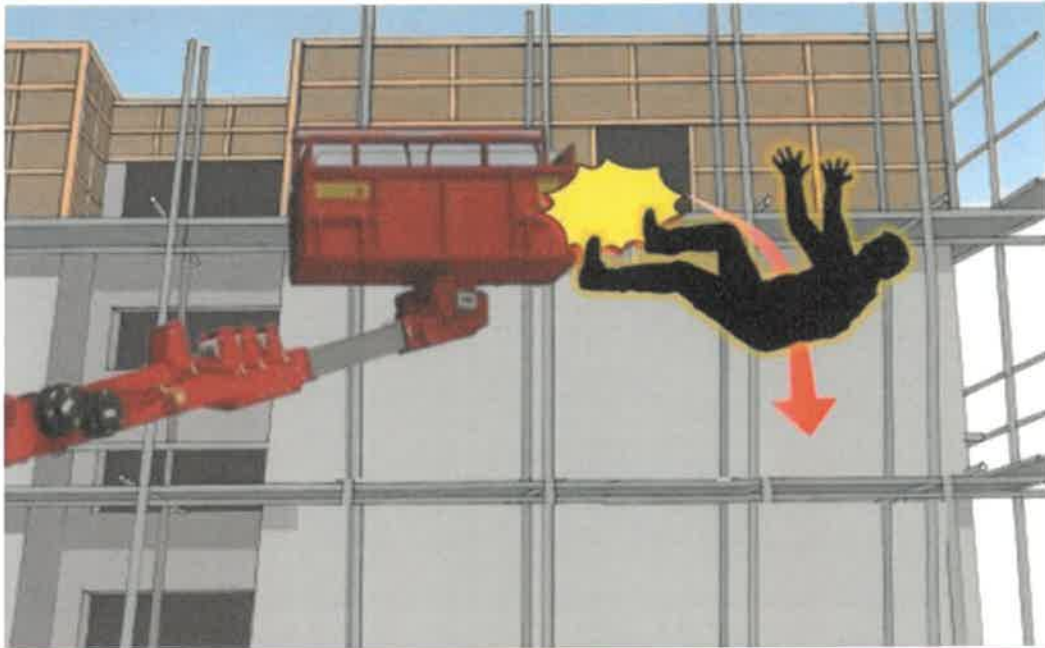
배포일시 : 2025년 4월 25일 17:00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건설업

재해 유형
떨어짐

‘25년 4월 24일(목) 11:30경 강원 영월군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비계로 이동 중 떨어져(20m) 사망**



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합니다.
-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사망사고 유발 SIF

2024-산업안전실-18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고위험요인

높은 장소 작업

높은 장소 - 설비 위, 건물 지붕 등

1 밟고있는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72.6%



6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1.1%



3

달비계 지지로프 및
고정부 접속 상태 불량

4.8%

2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14.5%



5 이동동선에 방치된
물체, 구조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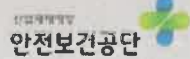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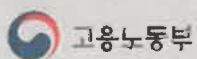
1.6%

4 설비 구조물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이 없는 작업대

3.8%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담함



1



무엇이 위험한가요? 밟고있는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❶ 마감재 파손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설치
- ❷ 작업 장소에 지붕 사다리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 사용

2



무엇이 위험한가요?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❶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❷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❸ 근로자의 안전대 체결여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 실시

3



무엇이 위험한가요? 달비계 지지로프 및 고정부 접속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❶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달비계 로프를 결속
- ❷ 지면까지 닿는 적절한 길이의 달비계 로프 사용
- ❸ 별도의 수직 구멍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4



무엇이 위험한가요? 설비 구조물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이 없는 작업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❶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 ❷ 작업발판의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5



무엇이 위험한가요? 이동동선에 방치된 물체, 구조물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❶ 근로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
- ❷ 구조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락 위험장소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이동

6



무엇이 위험한가요?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❶ 운반하는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
- ❷ 적재한 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쌓아 올리고 고정(랩핑 등)
- ❸ 임시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의 화물 적재 금지

1. 개정이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안 제558조제4호)
-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562조제4항)
-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6조제2항)
-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23. ~ 3. 4.)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강화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제560조의 제목 “(온도·습도 조절)”을 “(실내 작업에서의 온도·습도 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3.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제562조의 제목 “(고열장해 예방 조치)”를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6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2.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1조 중 “갖추어”를 “충분히 갖추어”로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

(제559조제4항 관련)

1. 체감온도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
2.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3. 다만,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558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u>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u>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① (생략) <u><신설></u>	제560조(실내 작업에서의 온도·습도 조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3.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62조(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

<신 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① -----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

-----.

<삭 제>

<삭 제>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

<신 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2.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 추어 두어야 한다.	----- <u>충</u> <u>분히</u> <u>갖추어</u> --.
--------------------------------	--

사 진 대 장



일자	2025 년 4 월 30 일	장소	안전교육장
내 용	4월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일자	2025 년 4 월 30 일	장소	안전교육장
내 용	4월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사 진 대 장



일자	2025 년 4 월 30 일	장소	안전교육장
내용	4월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일자	2025 년 4 월 30 일	장소	안전교육장
내용	4월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